

-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



부산남구신문

호외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호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608-701)

외 ☎ 607-4071 / FAX 607-4069

선	기 관 의 장
람	

제349호 2013. 9. 11.(수)

공 고

- ▶ 공고 제2013-781호(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

고 시

- ▶ 고시 제2013-102호[도로명주소(폐지) 고시]12

공 람									
--------	--	--	--	--	--	--	--	--	--

공 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3-78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1 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개정이유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 차별·비하 자치법규 개선요구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기준관련 용어 수정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의회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나. 장애인 차별·비하 문구 수정(안 제5조 제1항)

장애인 차별·비하적 표현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

다.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및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 4항)

라.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마.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근거법령 일부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를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를 “제34조”로 수정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 607-4014, FAX : 607-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 상해 시 보상금 지급기준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 차별·비하 자치법규 개선요구 및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관련조항 중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수정하여 법문표현의 통일성 확보 및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에 기여
-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기준관련 용어 수정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의회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수정
- 장애인 차별·비하 문구 수정(안 제5조 제1항)
⇒ 장애인 차별·비하적 표현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
-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및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제4항)
-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근거법령 일부수정 (별지 제1호서식)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를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3. 9. 11~10. 1(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5조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직무” 라 함은” 을 “ “직무”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의정활동비” 라 함은” 을 “ “의정활동비” 란” 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3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 를 “ “유족” 이란 의원” 으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를 “본인이 부양하고” 로, “자를” 을 “사람을” 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 중 “의회의원 당해년도” 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해당년도” 로, “상당한” 을 “상응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3호에 따른” 으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을 “해당하게 되면” 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호에 따른” 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호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 “상해” 라 함은” 을 “ “상해” 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을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를 “사망일부 6개월 이내” 로,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를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되,”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내용을 통보한다”를 “지급 내역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인과 위원4인”을 “1명과 위원4명”으로, “1에 해당하는 자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제1호에 따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를 “위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결된다”를 “의결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첨부서류의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로 하고, 서식 하단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무</u>”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현지시찰 및 순방활동 포함한다)을 말한다 2. “<u>의정활동비</u>”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u>유족</u>”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u>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u> 	<p>제1조(목적) ----- ----- <u>제35조에 따라</u>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직무</u>”란 ----- ----- ----- ----- 2. “<u>의정활동비</u>”란 ----- ----- <u>제33조에 따른</u> ----- ----- 3. “<u>유족</u>”이란 의원----- ----- <u>본인이 부양하고</u>----- ----- <u>사람을</u> ----- -----.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② (현행과 같음)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부산광역시의회의원</u> <u>해당년도</u>-----<u>상응하는</u> ----- 2. ----- <u>부산광역시의회의원</u> <u>해당년도</u>----- ----- <u>상응하는</u> -----

현 행	개 정 안
<p>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남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 한다.</p>	<p>3. 그 밖에 ----- ----- ----- -- 제3호에 따른 ----- ----- 해당하게 되면 ----- 제2호에 따른 ----- --- 제3호에 따라 ----- ----- .</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 “상해”란 ----- ----- ----- .</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그 밖의 ----- -----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p> <p>② -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날부터 ----- -----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되, ----- 따라 ----- ----- .</p> <p>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따라 ----- ----- .</p>

현행	개정안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u>구좌</u>에 입금한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u>그 내용을 통보한다.</u></p>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u>위원 4인</u>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u>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의원중 1인</u> 2. (생략) 3. <u>의무직 공무원 1인</u> 4. <u>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u> <p>③ <u>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u>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u>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u>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기타</u>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p>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u>계좌</u>-----.</p> <p>② ----- ----- <u>지급 내역을 알려야 한다.</u></p> <p>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명과 위원 4명</u>----- -----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1명</u> 2. (현행과 같음) 3. ----- <u>1명</u> 4. ----- ----- <u>1명</u> <p>③ <u>제2항제1호에 따라</u> ----- ----- <u>위촉하는 경우</u>-----.</p> <p>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u>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u></p> <p>제10조(심의회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한다.</u></p> <p>②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u> -----.</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생 략)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심의회 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의 경우 : <u>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u>,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인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p>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구의회의장 (직인)</p> <p>남구청장 귀하</p> </div>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 -----<u>의결한다.</u> ③ ----- - <u>날부터</u> ----- <u>결과</u> <u>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u> ----.</p> <p>제15조(심의회 의 수당등) ----- -----<u>위원에게는</u>----- ----- <u>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u>-----.</p> <p>[별지 제1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u>, - ----- 2. -----: ----- ----- 3. ----- <p>----- <u>지방자치법 제34조</u> ----- ----- ----- -----</p> </div>

고 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3-102호

도로명주소(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61번길 19 외 5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61번길 19	2013. 9. 11.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34번길 20	2013. 9. 11.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3번길 106	2013. 9. 11.	건축물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3번길 104	2013. 9. 11.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3번길 111	2013. 9. 11.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76번길 53	2013. 9. 11.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관리과 (051-607-4741~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